

(제1-3호)

유상증자 결정

I.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
	기타주 (주)	4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4,000,000
	기타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 배정증자

【제3자 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
	기타주 (원)	5,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2항
9. 납입일		2019.10.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07.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10.28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株式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株式의 현물 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株式 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 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0.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 시 그 사유		면제 (비상장법인, 제3자배정)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 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 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2항	운영자금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 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 수(주)	비고
에이스 투자금융(주)	-	당사와 동일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Know-how 공유 및 Synergy 창출을 위함	전환사채(CB) 30억원 발행 및 인수(2019.10.25)	400,000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

- 주1)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주2)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
- 주3) “신주발행가액”은 보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발행가를, 예정가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발행가 및 확정예정일을 기재
- 주4) “발행가 산정방법”은 기준주가 결정방식 및 적용 할인을 또는 할증율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할인을 또는 할증율은 보고일 현재 이사회 등에서 정한 할인을 또는 할증율을 말함
- 주5) “신주발행가액”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행가 산정방법”은 반드시 기재
- 주6)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기재하고,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
- 주7) “1주당 신주 배정주식 수”는 소유주식 1주당 유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 까지 기재한다.
- 주8) 【제3자 배정 근거, 목적 등】의 “제3자 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에는 3자 배정 증자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회사의 정관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에는 3자 배정 증자의 사유, 증자대금의 사용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주9)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는 영 제2조의2에 의한 구체적인 관계를 비교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

- 주10)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의 “선정경위”에는 3자 배정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에는 이사회결의일 전후 6월 동안의 회사와 배정대상 제3자와의 거래내역 및 향후 계획(제품매출·매입, 자산매각·매수, 담보제공 등 제반거래 포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비고”에는 보호 예수 기간 등을 기재
- 주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주1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및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3제3항의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기재하며,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및 주식 수는 해당 현물출자자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을 포함),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을 포함)의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
- 주13)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주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해당 보고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해당여부를 기재
- 주15) 해당 신고내용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신고인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 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 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